



제314회 임시회

2012.09.21.

도민을 섬기는 열린 의회

전문위원 검토보고

○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

교육위원회 전문위원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

검 토 보 고 서

1. 제 출 자 : 충청북도교육감

2.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 2012년 8월 31일

○ 제출일자 : 2012년 9월 4일

3. 제안이유

- 가칭)충청북도제주교육수련원 설립예정 위치 변경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 목적의 변경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충청북도의회의 의결을 구하려는 것임.

4. 주요내용

□ 당초취득

(단위 : m², 천원)

재 산 의 표 시				추정금액 (천원)	취 득 시 기	취득 사유	취 득 소유자	비고
기관명	구분	소재지	수량(m ²)					
충청북도 교육청	토지	제주시 도두일동 2540-1 외	7,352	2,640,000	2012. 상반기	가칭)충청북도제주교육 수련원 설립에 따른 부지 취득	교육감	

□ 변경취득

(단위 : m², 천원)

재 산 의 표 시				추정금액 (천원)	취 득 시 기	취득 사유	취 득 소유자	비고
기관명	구분	소재지	수량(m ²)					
충청북도 교 육 청	토지	제주시 애월읍 곽지리 1622-1	7,934	2,640,000	2012. 하반기	가칭)충청북도제주교육 수련원 설립부지 변경 취득	교육감	도면1

□ 변경사유

- 항공소음과 제주공항의 24시간 공항체제로의 변경예정 등에 따라 수련시설로 부적합하여 모래해변과 연계한 해양수련활동 등이 가능한 위치로 변경하여 취득하고자 함

5. 검토의견

- (가칭) 충청북도제주교육수련원 설립부지 제주시 도두일동 2540-1번지 외에 7,352m²(추정금액 2,640,000천원)를 취득에서 제주시 애월읍 곽지리 1622-1번지로 하여 7,934m²(추정금액 2,640,000천원)를 변경취득하는 것으로 당초보다 582m²가 증가됨.
- 당초 교육위원회에서 공항근접에 따라 소음으로 위치변경 제안 등에 따라 수련원 시설로 부적합하여 모래해변과 연계한 해양수련활동 등이 가능한 위치로 변경하는 것으로 적절한 결정으로 사료됨.

관 계 법 령 발 취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세워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관리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2.4>

②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 관리계획의 작성기준 및 변경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았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6호에 따른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8.12.26]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매입, 기부채납, 무상 양수, 환지(換地), 무상 귀속, 교환, 건물의 신축·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및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처분(매각, 양여, 교환, 무상 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및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이 경우 기준가격은 토지에 대해서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算定)한 금액

을 말한다. 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로 하고, 건물과 그 밖의 재산에 대해서는 「지방세법」에 따른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건물의 신축·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의 경우에는 토지보상비 등 토지를 취득하는 데 드는 비용을 제외한 **건축비 및 시설비** 등 사업비로 한다.

가. 취득의 경우: 20억원(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0억원)

나. 처분의 경우: 10억원(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의 경우에는 20억원)

2.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 1건당 6천제곱미터(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 1건당 5천제곱미터(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2천제곱미터)

[전문개정 2009.4.24]

□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3조(공유재산 관리계획) ① 법 제10조 및 영 제7조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 계획은 교육감이 다음 연도 예산편성 전까지 충청북도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 중에 공유재산 관리 계획의 변동이 있을 시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충청북도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0.8.6>

②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작성은 재산관리 총괄 전담부서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림에 대해서는 공유임야관리 전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2.6]